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9.

발 의 자 : 김태호 · 박충권 · 우재준
권영진 · 최형두 · 신성범
서천호 · 조승환 · 엄태영
이종배 · 정점식 · 강명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
공시하면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
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
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
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
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
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
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
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
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

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,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3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30”을 “30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은 100분의 50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정보보호 공시) ① · ② (생 략)	제13조(정보보호 공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 황을 공개한 자가 「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 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 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30 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은 100분의 50)----- -----.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